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친환경차를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전기차가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완속충전기에 장기간 주차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 2) 이에 공공기관등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등의 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

-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 1) 현행 제18조의6 제1항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목적 이외의 장기주차로 인한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에 장기주차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완속충전시설에 대해 완속충전시간(10시간 내외)을 고려하여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3) 완속충전시설 내 전기차가 1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가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일 것
2.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공공기관등의 장 전용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할 것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를 “공공기관등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를 “공공기관등의”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를 “공공기관등의”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2시간

나.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12시간

별표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가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일 것
<신 설>	2.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신 설>	3. 공공기관등의 장 전용차량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할 것
1. ~ 3. (생략)	② ----- 공공기관등의 -----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등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 공공기관등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6.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신 설>	가.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2시간												
<신 설>	나.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12시간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가. ~ 바. (생략)</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바. (생략)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가. ~ 바. (현행과 같음)</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바.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바. (생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사.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2시간의 범위에서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4322